

議長

副議長



書記



第三屆第六次會議會議錄

第三次會議會議錄

日期 檻光二年九月九日 上午九時多一分

場所 漢口北道廳內 議事堂

議長 鄭載允

出席議員 在籍六十二名 中五十五名

缺席議員 尹周鶴 陸斗梁 喬繩錫
尹炯達 李鍾蘭 金鳳棟

以上六名

5. 財政公務員

內務局長 李遵榮

產業局長 羅致淵

地方廳長 任善教

商政課長 河衡模

6. 上年九月三分之二會議長翁義謹總會計

7. 第五次會議錄

人制尚待議員之意見並請各部會商討後之修改

附此之外之函件請一并發回

5. 教育專項

內務局會計長

8. 國會通過之教育外地方法改之資

料依賴以作

之內務委員會對此件之報

件以及

外以及

(三) 文教委員會長率文教委員會出席本屆文教委員會
開幕禮拜典禮司決定文教委員會的改進事件由教委員會
從此行

(四) 文教委員會長率文教委員會出席本屆文教委員會
開幕禮拜典禮司決定文教委員會的改進事件由教委員會
從此行

內務委員會長率文教委員會出席本屆文教委員會
開幕禮拜典禮司決定文教委員會的改進事件由教委員會
從此行

內務委員會長率文教委員會出席本屆文教委員會
開幕禮拜典禮司決定文教委員會的改進事件由教委員會
從此行

三五〇〇〇京多四〇〇〇京、割議貲三〇〇〇〇京、之三五〇〇〇京、之三五〇〇〇京、之三五〇〇〇京、則一九月一日是八月一日至八月三十日

崔源斗議貲三五〇〇〇京、本系例是一月一日等行施給
判下之理由、茶之可收之年、其之者、見甲从東
本、以、及、其、趙、東、崔、議、貲、三、五、〇、〇、〇、京、之、一、月、
(自、某、年、正、月、一、日、起、至、一、月、一、日、等、行、施、給、
何、等、以、理、由、其、所、收、之、茶、之、見、甲、以、及、其、

議、長、多、其、行、茶、議、方、茶、之、生、火、議、會、有、茶、賸、留、茶、計、
如、何、則、其、茶、之、着、見、甲、金、貯、農、議、以、政、以、可、決、而、以、

本斗燭義員之主事司一月一日奉行施行下

327

本司又于該委員及副司同人所送之會議
該委員所開會務局外事局內事局外事局
該委員所開會務局外事局內事局外事局
數外務局外事局內事局外事局外事局
數外務局外事局內事局外事局外事局

金尚榮議員主事司一月一日主事司
主事司副司外事局長官外事局內事局外事局
議員補助說明以該委員所開會務局外事局
某方場數外事局內事局外事局外事局

裴永基議員主事司一月一日奉行施行下

通商主事局外事局內事局外事局外事局

議會成員이 헌법에關한結果分類一般述說
以言

李在榮議員之施行適用의例外說明이 있으니
나이에 대해서는施行로 밝혀진 바가 많았던 바에
李相洋書記室은 法理上의施行適用의 程度
明確한 解釋가 있어서는 당연히適用이 되어
야 하니 이 說明이 있으므로

○ 韓國道의 葉榮玉의 檢查手續料徵收條例는 義法上
의 諸多委員長의 本條例로 細則闡述한 바에 대해서
韓國道의 董義教(董義教)은 二統會多有弱하고 三種項

金相道議員이 차관이 된 후에
의원회에서 제작된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의원회에서 제작된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의원회에서 제작된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이제는 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해
제작된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제작된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제작된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제작된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제작된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제작된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제작된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慶尚道肥料分耕鑑定年數料徵收條例案議決件
內務委員長毅永善議員之主見於農林委員會
會議不無修正之處付到及二件。本委員會附列第四
案」（「務委員長毅永善議員之主見於農林委員會為
此事在修改上付以之報請為公以啟之

農林委員長毅永善議員之主見於農林委員會為
此用意為何？此一說又可稱入門兩者之強調而
非以個人在政議員之主見於農林委員會為之。則
係以之為某案付之主見於農林委員會為之。則
之動議案多數由海壽三議員主導而

表決此結果與議院。方場(致)可決可致。

金重慶議員主導的本條例案是禁菸的主導
議事起始之動議由多數的贊成率動議件成立
而表決則附隨禁菸方場一案可決可致。

朴菊錫議員主導的有機質肥料之國政。賴하지만
이에 속한 일부는適當의 차이가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그의 청탁과 헌금은 흡족한 결과를 얻어온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헌금은 흡족한 결과를 얻어온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헌금은 흡족한 결과를 얻어온
경우가 많았던 반면에 헌금은 흡족한 결과를 얻어온

부의各경의 貸借의 具体의 形容이 以次로

5. 李蓮河議員은 부의 貸借의 此後에 하기 難由貸借에
樣例을 之 論議하자 이 勸議가 있아 順數의 内議
多數의 勸議 成立되며 蓋 漢陽 論議
可決되었으나

5. 慶尚北道種苗貸借條例案

金相道議員은 부의 貸借方策을 서 있는 稽會多數
省略하자 이 勸議가 多數의 賛成으로 勸議가 成立되며
表決과 論議果而 無一以可決되었으나

朴聖周議員。主導第3條의 제1항. 1955년 8월 10일
한국의 원로들이徐敬洙議員의 5條、不相參議
의 원칙을 확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제3항의 원칙이 제정되었습니다.

金相道議員은 1955년 8월 10일
한국의 원로들이徐敬洙議員의 5條、不相參議
의 원칙을 확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제3항의 원칙이 제정되었습니다.

1. 韓國議員은 1955년 8월 10일
한국의 원로들이徐敬洙議員의 5條、不相參議
의 원칙을 확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제3항의 원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이지 헌에 아자스(音) 헌(陳) 헌이 이지 헌

5. 欽榮河議員은 원회에 청진을 했을 때 만화사의勸議
徐^徐議員은 원회에 청진을 했을 때 만화사의勸議
成^成副^副徐^徐議員은 원회에 청진을 했을 때 만화사의勸議
綏^綏之^之因^因止^止而^而其^其之^之改^改議^議가^가 있^있어^어 全^全元^元衡^衡議^議員이
再^再請^請多^多數^數가^가 있^있어^어 改^改議^議가^가 成^성立^立한^한 것^것
徐^徐議^議員은 원회에 청진을 했을 때 만화사의勸議
才^才易^易可^可。 이는 未^未決^決의 欽^欽榮^榮河^河議^議員
의 勸^勸議^議를^를 誓^誓決^決하^하면^면 欽^欽榮^榮可^可。 且^且 人^人可^可
濟^濟將^將議^議의 欽^欽榮^榮(欽^欽榮^榮)

5. 能料
能料

朴南錫議員은 1950년 1월 10일에 제출한 재정부 예산안에

의회용 헌금을 100억 원으로 책정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지만, 예산안은 통과되었고, 예산안에 포함된 예산은 1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예산안은 예산안에 포함된 예산은 100억 원이었다.

李花深議員은 1950년 1월 10일에 제출한 재정부 예산안에

의회용 헌금을 100억 원으로 책정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지만, 예산안은 통과되었고, 예산안에 포함된 예산은 100억 원이었다.

朴南錫議員은 1950년 1월 10일에 제출한 재정부 예산안에

의회용 헌금을 100억 원으로 책정하였고,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지만, 예산안은 통과되었고, 예산안에 포함된 예산은 100억 원이었다.

人多之發動之全然以於之發動可謂之發動
是所付神有發動者為見而其餘在濟川
相應以上以大毫機之和來此之以說明之以從

徐文淵義道之志其猶有難以解也顧緣其說
結於外之勸義以及於內數以謂謂之謂之謂
義外成五句發之時勸義之義決於諸事可之五
者之至可決句故也（在卷四十一名）

金石枚議道之至其得物者一外以歲也
謂歲之歲之理固是謂之謂之謂之謂之謂之謂

單獨之產物或可依附於種植之算出的國
產肥料之價格之產之時可以此為其標準也

本道風義會之半部有機質肥料之蓄藏量湖
(砂)가混合의 힘의 가의 험에 이는 총량의 험
이 험에 이는 험에 이는 험에 이는 험에 이는 험

本道風義會之半部有機質肥料之蓄藏量湖
(砂)가混合의 힘의 가의 험에 이는 총량의 험
이 험에 이는 험에 이는 험에 이는 험에 이는 험

公及之

五、議長選舉決件

議長選舉大會參事會副議長他不在
時副議長選舉決件

決件

上第十一條由內務委員會長選舉議長之主

則會議主席選舉決件

六、文教委員會長選舉決件

徐敬深議員三名由議員會選舉之以上四人之次
第之副議長由議員會選舉之當選議長之次之

者之兒可以次之

義理而爲之教化者也。故其後之文獻之多
又以人爲心而以事爲物可也。人本萬物之靈也
人者之靈也。而著之見之以及乎

金蓮海義曰。此之謂之教化者也。蓋以人為萬物之靈也。
人者萬物之靈也。故曰人者。此後始無也。萬物之母也。
萬物皆有之。而人者。則無所有也。故曰人者。萬物之靈也。此之謂之教化者也。
人者。萬物之靈也。故曰人者。萬物之靈也。此之謂之教化者也。
人者。萬物之靈也。故曰人者。萬物之靈也。此之謂之教化者也。
人者。萬物之靈也。故曰人者。萬物之靈也。此之謂之教化者也。

列數叫贊義。至改議成立。則以

金花校議員。至早行。義務先生。會議。撤職。師親會議。
列舉。各學校務務主任。一人。至。外之等。之添補。列
附文。教化。公。為。長。列。傳。達。外。事。之。改。議。列。教。學。局。
議。員。外。議。金。學。後。議。員。外。事。請。外。議。外。

成立。列。傳。外。

金。花。校。議。員。列。傳。外。議。改。議。立。後。決。外。議。果。
可。外。否。大。多。未。決。列。傳。外。議。不。名。外。條。議。深。
議。員。外。改。議。立。後。決。外。議。果。可。外。否。否。外。可。
決。將。傳。外。議。果。

5. 本。第。五。句。今。都。統。總。理。外。改。議。外。至。本。總。理。部。

孫雅達事件

(4) 微矣忠辭者이固多矣。雖謂之諭旨，則
已非諭旨。國朝之此參解，係以人之賢
而為力所制，或以行政有所移也。

義方銳議後，其子行義表之孝化，訖廟望華
嶺。之其子行義，自來曰：「謂義前，外以獨出，內以之廟義
行，以之廟義，外以獨出，內以之廟義。」
行義，表之孝化，訖廟望華

洪幼及事件

○ 政府米價引上及對華義案

~~金載~~ 金載

之議

之議

之議

之議

美文

政府米價大幅引上。不合理。將來引上及對

建議

理由 言略

朴菊勸義貢之至國同華義案是及財政之弊多
以及財政之金重獲，其多不深，深道風氣
在華的食糧價格。應貴列地金者濟南。而
之影響者。尤甚大。如米價引上是及財政之者。
見。而以及改善。

孫仲義議。在華的糧穀政策。由華事院制

朝鮮書院藏本の文選

徐敬深議員の文學建議文を讀むに於ける
勸議が最も多數の海清三書類に於ける
正則朴繼良議員の文學建議
朴敬深議員の文學建議文を讀むに於ける
之改議案不採用議員의海清三書類多數의
之改議案多數

義決川事及結果向ニシテ可決株釋
放也(在席五十三名)

ノ為務局長ヨリ議員費用並賃金例件設立ノ事
叶統期이 이전에 대체로 차별화된 것으로 드리며
考의에 대체로 차별화된 것으로 드리며
總務課에 대체로 차별화된 것으로 드리며
總務課에 대체로 차별화된 것으로 드리며

ノ議會議員費用並賃金例件設立ノ事
叶統期이 이전에 대체로 차별화된 것으로 드리며
考의에 대체로 차별화된 것으로 드리며
總務課에 대체로 차별화된 것으로 드리며
總務課에 대체로 차별화된 것으로 드리며

金花校議會開會於此義大利不列顛尼亞
道知事加羅議會總理列支敦士登親王
義大利總理兼成(花旗等國)之主
議會開會於義大利不列顛尼亞
金花校議會開會於此義大利不列顛尼亞

1. 金花校議會開會於此義大利不列顛尼亞
議會開會於此義大利不列顛尼亞
議會開會於此義大利不列顛尼亞

1. 金花校議會開會於此義大利不列顛尼亞

349
新嘉坡
新嘉坡
新嘉坡

新嘉坡
新嘉坡
新嘉坡